지정기간

[여수시] 2025. 8. 28. ~ 2026. 8. 27.
[광양시] 2026. 2. 13. ~ 2027. 2. 12.

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제도

고용노동부여수지청

요 약

구분	지원사업	지원대상	지원내용	해당기관
사업주 지원	고용유지 지원금	▸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	▸(휴업·휴직)지원수준 확대	여수고용센터 광양고용센터
	지역고용 촉진지원금	▸지정 지역으로 이전·신설·증설한 사업주	▸채용자 인건비 지원	여수고용센터 광양고용센터
전직 지원 (근로자)	국민내일 배움카드	▸직업훈련이 필요한 재직자, 실업자	▸지원한도 상향 (자부담률 인하)	여수고용센터 광양고용센터
	국민취업 지원제도 (Ⅱ유형)	▸취업을 희망하는 저소득구직자 취약계층 등	▸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소득요건 완화	여수고용센터 광양고용센터

1. 고용유지지원금

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일부를 사업주에게 지원하여 경영부담 완화

○ 지원대상(지원요건)

❶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

- 기준달(고용유지조치 직전달)의 매출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 매출액보다 15%이상 감소
- 또는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추세

※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(여수시, '25.5.1.~'27.4.30.): 석화관련 매출액이 50%이상인 협력업체*는 매출액 10%이상 감소 지원요건 완화 <* 지자체(여수시)의 확인서 발급 필요> 여수시만 해당

❷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신고

- **(계획서 제출)** 역월에 따른 1개월 단위로 계획신고서를 실시일 전일까지 반드시 접수
- **(근로자대표와의 협의)**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와 사전 협의

❸ 고용유지조치의 실시

- **(휴업)** 기업전체가 휴업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조정, 교대제 개편 등을 통해 1개월의 단위기간동안 총근로시간 대비 근로시간을 20% 초과 단축
- **(휴직)**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직무상 보직이 정지되어 연속하여 1개월 이상 근로제공을 면제

❹ 계속고용 의무 준수

-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까지 전체 피보험자에 대해 고용조정(감원·권고사직 등) 금지

※ 참고(지원제외)

- 고용보험 취득기간이 90일 이하인 자, 일용근로자, 고용조정이 예고된 자,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·비속인 자는 지원 제외
-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 채용자가 있는 경우 해당 월 전체 부지급

○ 지원내용(지원수준 확대)

★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휴업·휴직수당의 8/10(대기업 6/10) 지원(1일 한도 68,100원)

<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(일반)>

-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·휴직수당의 2/3(대기업 1/2) 지원(1일 한도 68,100원)
  * 연간 최대 180일 한도

○ 지원절차

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(매월)	⇨	고용유지조치 실시	⇨	지원금 신청(매월)	⇨	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
사업주 → 고용24		사업주		사업주 → 고용24		고용센터 → 사업주

○ 문의처

- 국번없이 ☎ 1350
- 여수고용복지+센터 ☎ 061-650-0178
- 광양고용복지+센터 ☎ 061-798-1921

2. 지역고용촉진지원금

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고용위기(선제대응) 지역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원하여 경영부담 완화

○ 지원대상(사업주 요건)

- 고용위기(선제대응)지역 지정기간에 해당 지역으로 사업 이전, 신설 또는 증설*하는 사업주
  * 신설: 사업장 최초설립, 폐업(소멸) 후 업종 전환하여 사업개시
  * 증설: 기계장비 확충, 사무실 추가 임차 등 생산활동 관련 1,000만원 이상 물적투자
- **(계획신고)** 이전·신설·증설 완료(조업 시작) 이전에 제출(근로자 고용계획 포함, 변경시 변경신고)
- **(조업시작신고)** 계획신고일부터 1년6개월 내 이전·신설·증설되어 조업시작, 1개월내 시작신고
  * 조업시작일: '사업장 가동일' 또는 '근로자 채용일'
- **(제외업종)** 주점업, 부동산업,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, 공공행정, 협회 및 단체,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, 가구 내 고용활동, 청소년유해업소, 계절적·한시적사업, 고용여부가 불분명한 사업, 다른 법령 및 예산에 따라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

○ 지원대상(근로자 요건)

- 해당 지역에 3월 이상 거주(주민등록 전입 등재)한 구직자를 신규채용
-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6개월 이상 실제 고용(정규직, 계약직 무관)

○ 지원내용

- **(지원금액)** 신규채용자 **통상임금의 1/2**(대규모기업은 1/3)을 **1일 68,100원 한도**로 지원
  * 200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인원은 30%만 지원
- **(지원기간)** **최초 조업시작일로부터 1년**(개인별 1년이 아님)
  * 최초 6개월분 신청(중도퇴사시 부지급), 이후 분기별 신청(중도퇴사시 일할계산)

※ 유의사항(지원제외)

- ▸조업시작 전 3개월~조업시작 후 1년, 모든 근로자 중 1명이라도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
- ▸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, F-2,F-5,F-6 외의 외국인, 임금체불, 최저임금 미만인 경우
- ▸해당 피보험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같거나(동일사업주 재고용), 관련성이 있는 사업주인 경우(관련사업주 고용) 지원제외

○ 지원절차

지역고용 계획신고	⇨	이전·신설·증설 및 조업개시	⇨	조업시작신고	⇨	6개월 이상 고용 후 지원금 지급신청	⇨	지원금 지급 및 사후관리
사업주 ↓ 고용센터 (고용24)		사업주		사업주 ↓ 고용센터 (고용24)		사업주 ↓ 고용센터 (고용24)		고용센터(고용24) ↓ 사업주

○ 문의처

- 국번없이 ☎ 1350
- 여수고용복지+센터 ☎ 061-650-0157
- 광양고용복지+센터 ☎ 061-798-1921

3. 국민내일배움카드

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

○ 지원대상

- **(재직자)**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내 사업장 소속 고용보험 피보험자 또는 해당 지역에 주소(카드 수령지)를 두고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
- **(실업자)** ①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실업자(신청시점 기준 3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), ②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사업장에서 실직한 자(여수: `25.5.28.~`26.8.27., 광양: `25.11.13.~`27.2.12.)
- **(자영업자)**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에서 신청시점 기준 1년 이상(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 연월일 기준) 사업하고 있는 자영업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
  * 부동산임대업이 아닌 사업자로서 최근 1년간 매출과세표준(수입금액)이 4억원 미만인 경우
  * 다른 사업장에 근로자로 취업하기를 희망하거나 업종을 전환하여 창업하기를 희망하는 경우

○ 지원내용

★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일반 대상자에게도 우대지원대상과 동일한 혜택 부여
→ 본인부담률 0~20%로 인하, 계좌 한도 상향(300만원→500만원)

<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내용(일반)>

-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등에게 월 11.6~31.6만원 지급
  (단위기간 1개월 출석률 80% 이상 시)
  *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미지급
- 지원금액 : **5년간 최대 300만원, 본인 부담률 15~55%**
- **우대지원대상(저소득층 및 특정 대상) : 본인 부담률 0~ 20% , 계좌 한도추가 200만원**

○ 이용방법

- **(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)**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(www.work24.go.kr) 신청 가능
  *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: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⇨ 고용센터 담당자 유선상담 실시
  *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: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⇨ 필요한 경우 진단·상담 진행

○ 참고사항

- 국민내일배움카드 계좌한도 추가지원은 **추가지원 신청일 기준**으로,
  훈련비 지원 비율은 **훈련과정 시작일 기준**으로 지정기간 내인 경우 적용
- 훈련과정은 고용24(www.work24.go.kr) 검색

○ 문의처

- 국번없이 ☎ 1350
- 여수고용복지+센터 ☎ 061-650-0171
- 광양고용복지+센터 ☎ 061-798-1903

4. 국민취업지원제도

취업을 희망하는 저소득구직자, 자립준비청년 등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, 소득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

○ 지원대상

-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기간 내 취업지원 신청자 중 지역 소재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(여수) '25. 5. 28., (광양) '25. 11. 13.,이후 이직한 이력이 있고 현재 실업 상태인 자 (타지역 거주자 포함)

※ 취업지원 신청 시 취업취약계층(고용위기지역 등 지정에 따른 실직자)임을 체크

○ 지원내용

구분	유형	세부 지원내용
취업지원	공통	ㅇ **(취업활동계획) 심층상담**을 통해 개인별 역량에 따른 취업활동 계획 수립 ㅇ **(취업지원서비스)**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**직업훈련·일경험·복지 프로그램 등*** 제공 * (취업지원) 직업훈련, 일경험, 복지프로그램(생계, 의료, 금융, 돌봄서비스 등) 연계 (구직활동지원) 취업서류·면접 컨설팅, 일자리정보 제공, 구인·구직 만남의 날, 취업알선 등
소득지원	Ⅰ유형	ㅇ **(구직촉진수당)**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시 **월 60~100만원*, 6개월 지원** * 기본 60만원 및 부양가족(만 18세 이하, 70세 이상, 중증장애인) 1인당 10만원씩 추가
	Ⅱ유형	ㅇ **(취업활동계획수립 참여수당)** 취업활동계획 수립시 **15~25만원(1회)** 지원 ㅇ **(참여장려수당)** 고용센터 방문하여 집중 취업상담·알선참여시 **1회 2만원(5회)** 지원
	공통	ㅇ **(취업성공수당) 6개월 근속시 50만원, 12개월 근속시 100만원** 지원* * Ⅰ·Ⅱ유형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% 이하인 자, **특정계층(소득무관)**

<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특정계층으로 참여>

▶ 특정계층 : 15~69세 **취업취약계층***은 소득 및 재산 무관

* 취약계층: 기초연금수급자, 여성가구주, 결혼이민자, **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실업자** 등

☞ 원칙상 **중장년(35~69세)**의 경우 중위소득 100% 이하만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에 참여 가능하나,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경우 소득수준과 무관, "**특정계층**"으로 참여 가능

○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

취업지원신청	⇨	수급자격 인정	⇨	취업상담 및 취업활동계획 수립	⇨	취업지원·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제공	⇨	구직활동 및 취업
실업자 ↓ 고용24 또는 고용센터 방문		고용센터		고용센터, 위탁기관		고용센터,위탁기관 ↓ 수급자		수당 지급

○ 문의처

- 국번없이 ☎ 1350
- 여수고용복지+센터 ☎ 061-650-0174
- 광양고용복지+센터 ☎ 061-798-1904, 1906